

의 안 번 호	제2967호
의 결 연 월 일	2025. . . (제 회)

의 결 사 항	
---------------	--

고성군 청림도 향상 지원 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 연월일	2025. 7. 4.

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제2967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7. 4.

제출자: 고성군수

1. 제정이유

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과 실효성 있는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목적, 정의, 군수책무, 공무원의 의무,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5조)
- 나.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다. 사업, 청렴도 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8조)
- 라. 협력체계,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(안 제9조 ~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, 제17조
- 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
 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- 개선사항 없음 [복지지원과-18806(2025.5.15.)]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5-869호
 - 가) 예고기간: 2025. 5. 12. ~ 6. 2. (21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구조문 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- 5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불임

4. 본문: 불임과 같음

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성군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통해 고성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직자”란 고성군 및 출자·출연기관등의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

나. 「고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」 및 「고성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」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

다. 출자·출연기관등의 임직원

2. “출자·출연기관등”이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고성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「고성군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을 말한다.

3. “부패행위”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

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공직자의 청렴 의무)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청렴도 향상 및 청렴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
2.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
3.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·추진과제
4.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·시행과 관련하여 고성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.

제7조(사업)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
2.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
3. 반부패·청렴도 평가 및 조사
4. 부패방지시스템 구축·운영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홍보대상에게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8조(청렴도 조사)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(이하 “조사”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협력체계)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0조(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) 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할 수 있으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, 소속,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·이용되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1. 재정수반 요인**

가. 관련 조문: 안 제1조(목적), 제7조(사업)

나. 비용발생 요인: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과 실효성 있는 다양한
청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액 반영

다. 소요예산

- 10,000천원 = 5천원(홍보물) × 1,000명(참여자, 홍보대상) × 2회(횟수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1호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
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조례의 제정에 운영비용은 연간 10,000천 원으로 예상되며, 수반되는
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작성자: 기획예산담당관 조 석 래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체)

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

4. “부패행위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
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
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□ 개인정보 보호법

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.

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여부,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.

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(공유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할 수 있다.